

공 시 송 달

- 재산압류 통지 -

- 공고기간 : 2024. 4. 18. ~ 5. 10.
- 서류의명칭 : 재산 압류 통지
- 압류일자 : 2024년 4월 15일
- 공고내용

채납자현황		서류의 명칭 및 내용	급수전 주소	압류한 재산	채납 기간	채납액(원)			
주소	성명					계	상수도 사용료	하수도 사용료	물이용 부담금
울산광역시 중구 평산로 3*-*	주식회사 제*에*글 *벌	명 칭: 재산압류예고(토지) 내 용: 재산 압류 통지 및 채납금 납부 안내	울산광역시 중구 평산로 3*-*	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59*-*	2024.1. ~ 2024.2.	2,093,410	878,620	1,177,290	37,500

위 재산압류 통지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(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-12(교동), 052-229-5663)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2024. 4. 18.

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

